

2022.0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제출서류 안내

-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

제출서류 목록

3p

2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6p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8p

4

취약계층별 증빙서류

10p

유의사항

장애인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장기 실업자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1. 제출서류 목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제출 서류

-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
-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급근로자 전체)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 ✓ 취약계층 해당자별 증빙서류

유의사항

- ✓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요
- ✓ 증빙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삭제 처리** 이후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 시 서류 반환 및 접수 불인정)
- ✓ 반드시 유급근로자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 ✓ 검토(승인) 결과 수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반드시 기재
- ✓ 설립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 명, 대표자,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발급 불가
(이와 같은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 된 설립인가증 재발급 필요)

2.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발급처 협동조합 (www.coop.go.kr)

사이트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발급 안내



The screenshot shows the Cooperative Portal website. The navigation path is: Home > Information > Notice > Notice. The '알림마당' (Notice)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The '공지사항' (Notice)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2. The notice titled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발급 안내'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3.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안내] 2017~2020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		2021.07.12	115
[공지] 2021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사업 우선협상자 대상자 공고		2021.06.30	304
[공지] 2021년 1차 1000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06.29	203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발급 안내		2021.05.08	306
[안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한 임시적 지원정책 적용 안내(수정)		2021.04.06	884

발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사이트 접속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용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ebsite. The navigation path is: Home > News & Materials > Notice. The '소식·자료' (News & Materials)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The '공지사항' (Notice)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2. The notice titled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3.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방법

사이트 접속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신청 → 출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①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관정 심사청구

증명원 신청/발급

증명원 신청/발급

민원증명원 신청/발급

- 민원증명원 신청/발급
 - 민원증명원은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증명원의 종류: 보험가입증명원 보험료 완납증명원 **②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민원증명원 신청 절차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증명원을 선택합니다.
 - 보험가입 증명원 보험료 완납 증명원 및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보험종류, 사업장관리번호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은 산재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재해일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부담구분 * 고용 산재

사업장 관리자번호 *

조회기간 * 2020-06-11 ~ 2021-06-10 한화특자

발급용도 * 신청하세요

4. 취약계층별 증빙서류

유의사항

✓ (취약계층 인정 시점) 해당기업 채용 당시

※ 저소득자 외 채용 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채용 당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였으나 해당기업에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기업 퇴직시까지 취약계층 인정

✓ 본 자료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 안내를 위한 요약 자료로, 신청서 제출 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범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확인을 위해 본 자료에 기술된 증빙서류 외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

확인방법1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접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

사회보장급여 [결정(직함)]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획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금	등급	종합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간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원
본인부담금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획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사위원회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비 고 후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당할 일이 없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청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청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이용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청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비스이용권 가짜류 조제분류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형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6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지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중 인성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확인방법2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하기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온라인신청 나의 신청내역 인증서내보내기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맵 위민크기 100% 북지로 홈

이용방법 복지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① 증명서 발급** 나의 이용내역

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하기

② 증명서발급하기

- 증명서 발급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통인증서(구 국민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나의 이용내역**에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 동일 발급신청한 증명서는 동일(24시간)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신청자·유가족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수급자의 수급권을 확인 받는 온라인신청 발급 민원입니다.

* **장애인 증명서**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증명 발급 서비스입니다.

*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로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증명 발급 서비스입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민원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적] <신설 2015.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p> <p>년 월 일</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발급번호 제 호</p> <p>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210mm × 297mm (민세출지 (특급) 120g/㎡)

※ 고용보험 가입일 직전에 발급한 경우 인정

확인방법3 수급자증명서

발급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수급자 증명서' 검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클릭 → 신청



정부24 서비스 보조금24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

신청·조회·발급

분류: 대분류 전체 중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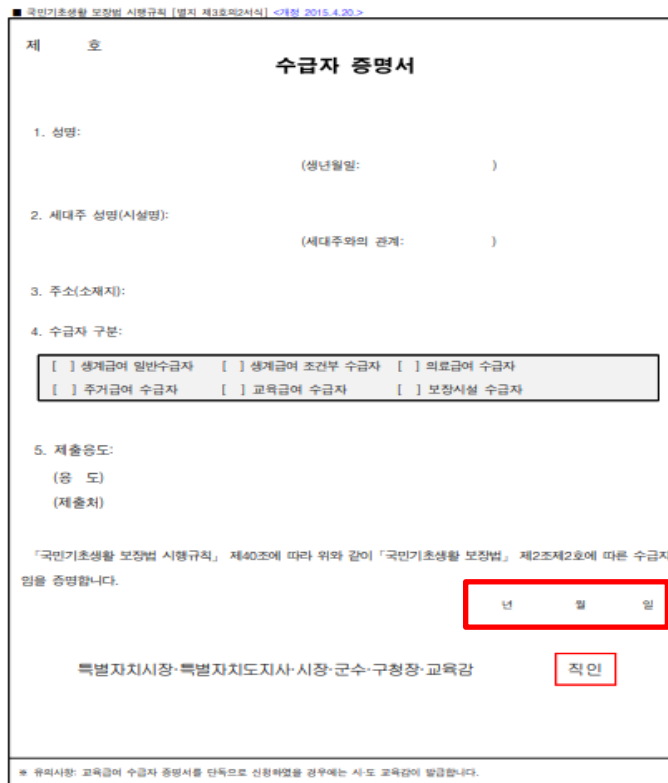
기관: 기관분류 선택 제공기관 전체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

민원서비스
 정부서비스

 결과 내 재검색

신청순 | 정확도순 | 가나다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서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충사실 수급자

5. 제출응도: (응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직전에 발급한 경우 인정

기타) 최근 6개월간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 ✓ 등본에 기재된 인원 모두에 대한 해당기업 고용보험 가입일 직전 6개월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 제출
-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 해당 자료 외 가구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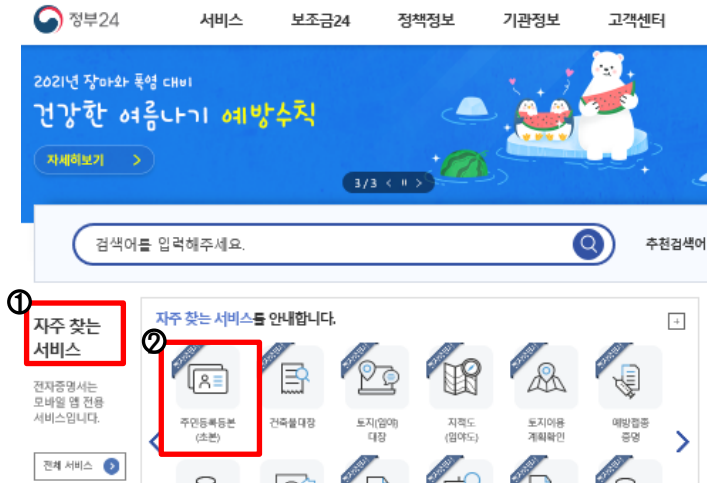
* 추가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 (www.gov.kr)

사이트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부24 서비스 보조금24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

2021년 장마와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 예방수칙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추천검색어

자주 찾는 서비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전용 서비스입니다.

전체 서비스

자주 찾는 서비스들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도지(읍)에 대장

지역도 (읍·여도)

도지(읍) 계획확인

매입결정 증명

문서확인번호 :

1/1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신청인:

용도 및 목적:

2021년 07월 19일

세대주 성명(한자)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 / 신고일 년 / 월 / 일	
주소		주소		
원주소: -- 공란 --				
번호	세대주 관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발생일 / 신고일 등록상태	변동사유
1	본인	()		
2	배우자	()		
3		()		
== 이하 여백 ==				

-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가 보이도록 출력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원



민원증명

민원증명 신청

민원증명 신청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 개인명의 공동 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등본에 기재된 인원 모두 제출

[참고] 20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참고] 저소득자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	804,294	827,276	769,048	851,994	863,336	936,909	918,850	971,829	1,029,487	1,043,277	1,006,626	1,053,954	1,132,674	1,433,656
2인	1,396,156	1,449,387	1,452,657	1,511,991	1,603,685	1,704,470	1,830,250	1,912,919	1,904,979	1,885,918	1,987,399	1,987,399	2,054,841	2,235,550
3인	1,969,319	2,108,077	2,077,525	2,225,379	2,385,630	2,539,879	2,628,447	2,713,692	2,771,118	2,834,764	2,913,278	3,086,764	3,153,183	3,415,986
4인	2,280,311	2,403,657	2,366,367	2,517,348	2,749,099	2,937,952	2,994,801	3,065,884	3,152,582	3,213,756	3,286,477	3,486,185	3,602,555	4,089,882
5인이상	2,395,613	2,540,647	2,585,637	2,826,444	2,856,503	2,976,492	3,018,893	3,311,600	3,233,056	3,268,902	3,236,883	3,669,790	3,863,369	3,992,680

● 고령자

해당자 만5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제출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장애인

확인방법1

복지카드



확인방법2

상이군경회원증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국가유공자증 내 보훈번호21(전상), 23(공상) 모두 상이군경회원 대상

확인방법3 장애인증명서

발급처1 정부24 (www.gov.kr)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장애인증명서' 검색 → 신청

발급처2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하기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6. 4.>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비국인등록번호 또는 국·외소재신규번호)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최초·재취득 등록일자	
중합 장애 정도			
제출처 및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확인서 (고용지청)

- (2017년 상반기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I, II 유형
- (2017년 상반기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확인방법2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수료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 만 40세 이상 해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

성명: _____

IAP 번호: _____

신청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주소: _____

사업유형: I 유형

전체 진행기간: - - - - -

1단계 진행기간: - - - - -

2단계 진행기간: - - - - -

3단계 진행기간: 2017-03-22 ~ 2017-03-26

소속기관: 고용센터

위와 같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청장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발급처 정부24 (www.gov.kr)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검색 → 신청



1. 서비스

신청·조회·발급

분류: 대분류 전체, 중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기관: 기관분류 선택, 제공기관 전체, 포바일신청 가능서비스

2. 민원서비스, 정부서비스, 북한이탈주민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 무입니다.

민원서비스, 통일부,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발급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포털 (hanaportal.unikorea.go.kr)

사이트 접속 민원서비스 → 증명서 신청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신청



민원서비스

Home > 민원서비스 > 증명서 신청 > 증명서 신청

1. 민원서비스

2. 증명서 신청

3.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신청

민원서비스

- 증명서 신청내역
- 증명서 신청
- 거주지 보호 담당자 연락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민원서비스

학력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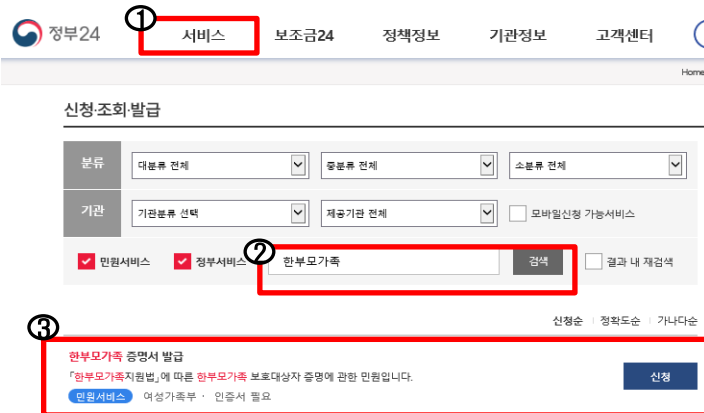
발급신청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방법

발급처 정부24 (www.gov.kr)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검색 → 신청



정부24 서비스 보조금24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

신청·조회·발급

부류: 대분류 전체 중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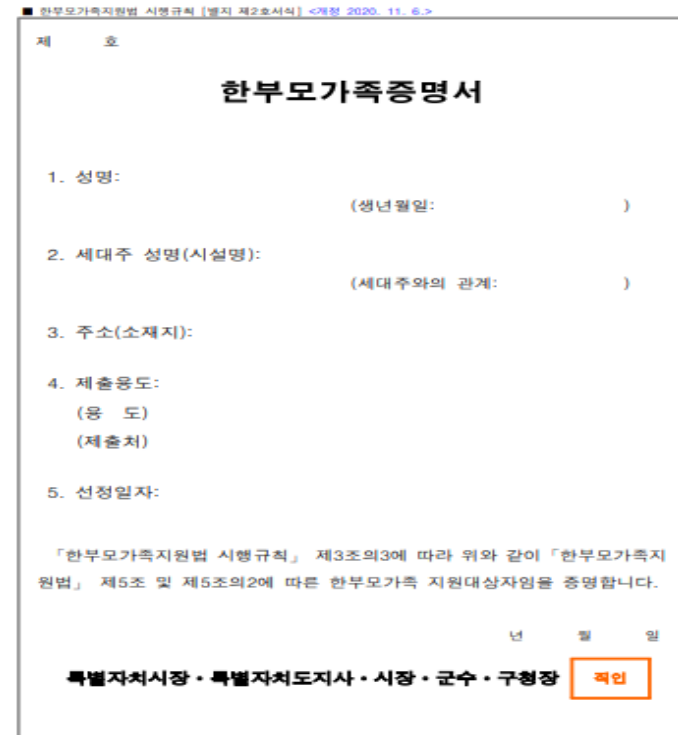
기관: 기관분류 선택 제공기관 전체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

민원서비스 정부서비스 한부모가족 검색 결과 내 재검색

신청순 | 정확도순 | 가나다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민원입니다.
민원서비스 여성가족부 · 인증서 필요

신청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정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적인**

210mm×297mm(배상지 120g/㎡)

● 성매매피해자

제출서류 성매매피해여성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자

제출서류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결혼이민자

제출서류

- 국적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 갱생보호 대상자

제출서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범죄구조피해자

제출서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결정통지서 신청자 이름 일치 여부 및 직인 확인

● 보호종료아동

제출서류 보호종료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실업상태)

제출서류 구직등록확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방법 구직등록 확인증 (워크넷 ·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민간취업알선기관)

발급처 워크넷 (www.work.go.kr)

사이트 접속 → 구직신청 → 나의 정보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발급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사이트 접속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제출서류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노숙인

제출서류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관련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제출서류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제출서류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확인

●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제출서류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제출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gov.kr)
-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 배우자·직계존 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접수 및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